

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등재산을 당해학교의 교육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3조(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4기종”을 “2000씨씨”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에우동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 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씨씨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별표]: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별 표]

## 동조례 적용을 받은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급	14, 79, 98, 99, 102, 104, 105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1항 (복합호수자)	35, 36,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47
6급 2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 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 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2 조(면제대상) ①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보철용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구세를 면제한다.</p> <p>1. 토지:종합토지세, 건물:재산세</p> <p>2. 자동차:면허세</p> <p>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2급은 분류번호 14, 79, 98, 102, 104, 105호, 3급은 분류번호 5, 22, 23, 24, 27, 31, 78, 81, 83, 86, 89, 503호, 4급은 분류번호 109, 112, 113, 504호, 5급은 분류번호 26, 29, 41, 77, 92, 505호에 해당하는 자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에 한하며, 이 경우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는 하지계통호수(분류번호 30, 32, 36, 37, 40, 44, 47, 49, 50, 53, 54, 59, 60, 65, 67, 70, 116, 117, 119, 121, 122, 126, 127, 131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제 2 조(면제대상) ① ..... ..... ..... 2000씨씨 ..... ..... .....</p> <p>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씨씨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p>